

의안번호	제 585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12월 일 (제 325 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공유재산)
무상사용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3년 12월 2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(공유재산) 무상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58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년 12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시설(공유재산)을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
 - 대상시설 :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
- 판매장(공유재산)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
 - 사용목적 : 도내 중소기업지원 제품 판매 및 홍보
 - 수탁자 : (재)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관련 법인이나 단체
 - 사용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간, 3년 단위로 기간 연장
-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회 동의 건의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감면) 제1항4호에 의거

3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설치·운영

청주시 성안길 핵심 상권지역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
- 면 적 : 대지 274.4㎡, 연면적 1,035.87㎡
 - 지하1층(226.68㎡), 1층(210.90㎡), 2층(210.90㎡), 3층(210.90㎡), 4층(176.49㎡)
- 사 업 비 : 1,772백만원(국비 886, 도비 443, 시군비 443)
 - 건물매입(부지포함)/1,400, 리모델링 등/372
- 운영방법 :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
- 매장구성 : 도내 및 전국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

구 분	내 용
3~4층 (387.39㎡, 117평)	공예조합·사회적기업 등 전시홍보·체험장
2층 (210.90㎡, 64평)	도내 중소기업 제품 및 전국(히트500) 판매장 2층: 리빙·주방용품, 지역특산품, 건강용품, 생활용품 등 1층: 화장품·뷰티상품, 디지털기기/팬시, 선물용품 등
1층 (210.90㎡, 64평)	
지하1층 (226.68㎡, 69평)	물품보관창고 등

※ 도내 중소기업 131개 업체 입점 예정

□ 추진경과

- 판매장 설치 공모사업 선정 : '12. 10.
- 판매장 공동추진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(3년간) : '13. 7.

* 중기청↔충청북도↔중소기업유통센터↔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

기관명	중소기업청	충북도청	유통센터	충북중기센터
역 할	·사업 총괄 관리 ·정부예산 매칭	·지자체 예산 매칭 ·판매장운영위원회 구성 운영	·상품 추천 및 공급 (오픈시MD 등협조)	·판매장운영 및 관리 ·판매원 재교육 등

- 판매장 소유권 이전(충청북도) : '13. 8.
- 판매장 실시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: '13. 9.~12

□ 판매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

- 대상시설 :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
 - 지하1층(226.68㎡), 1층(210.90㎡), 2층(210.90㎡), 3층(210.90㎡), 4층(176.49㎡)
- 사용목적 :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홍보
- 사용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간, 3년 단위로 기간 연장
- 수탁사업자 : (재)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관련 법인이나 단체
- 사 용 료 :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10 ※ 판매장 조례 적용 시

□ 사용료 부과 문제점

-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홍보 등을 위한 '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' 운영 사업은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
- 사용료 부과는 도의 예산지원액 및 판매수수료를 증가 요인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판단

□ 의결 요구사항

-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(중기청)과 우리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본래 추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,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감면) 제1항4호에 의거 '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'의 무상사용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건의드림

관련법령 발췌

<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>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>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-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8.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4. 제13조제3항제8호